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김호평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04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31일

발 의 자 : 김호평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경우, 김상진,
김재형, 김정태, 김태호,
문영민, 송정빈, 오한아,
오현정, 이동현, 이승미,
이준형, 이호대, 정진술,
한기영 의원(1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나. 협약체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